보 건 복 지 부

정보통신망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3-7557~8 전송: 02-504-1456
약무식품정책과 과장 : 조기원 사무관 : 김진석 담당 : 양진선

문서번호 약식65600-879
시행일자 2003.09.22 . 1년
공개여부 공개
경 유
받 음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참 조

선람			지시	
접수	일자		결재·공람	
	시간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질의회신

1. 경상남도 보건 65607-14765(2003.9.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귀 도에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재해로 약국에서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의 유실"로 인한 훼손시 조치사항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현행 약사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의하여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조제기록부의 경우 5년간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귀 도에서 질의한 경우처럼 재해로 인해 그 보존기한이 지나지 않은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가 손실되어 정해진 기간내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의 조치사항은 약사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관리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해 등록관청의 공무원 입회하에 훼손된 기록에 대한 적정 확인 절차를 거쳐 약사법제25조의2에 의거 환자 등이 요구시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임.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전결 약무식품정책과장 조기원